

제 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록

1. 일 시: 단기4285(1952)년 8월 25일 오전 10시 30분

2. 장 소: 의회 의사당

3. 개의성립:

1) 참석의원: 17명

李小圭, 李福柱, 明南喆, 金三星, 金南鎭, 李在洪, 陳福春, 林一男,
金京炫, 金八用, 鄭應杓, 金慶禧, 朴贊圭, 金采庸, 金子洪, 金永完
吳世一

2) 불참의원: 4명

劉正斗, 文宅鎬, 金吉煥, 李文吉

3) 참석한 자치단체의 직원

朴蓮太 총무과장, 吳在鵬 건설과장, 金滢善 산업과장, 金宗云 재무과장,
金容俊 호적과장, 姜聲哲 회계계

4. 보고사항:

1) 전회 회의록 통과

2) 각 분과위원회 회의록 낭독

3) 단기4285(1952)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예산 보고의 건

5. 부의안건

1) 단기4284(1951)년도 목포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단기4284(1951)년도 목포시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6. 개 회 식:

7. 개회선언

李小圭부의장

(오전 10시 30분)

◇ 金永完의원 긴급동의

- 향간에 여론이 자자한 호별세 부과에 대한 여론과 7월 14일부 신문지상에 게재된 동장 임명, 7월 10일자 鄭應杓의원이 발언한 바와 같이 잡부금 일체는 시의회를 거쳐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죽교동 2구에서는 모종의 잡부금을 징수한 사실과 긴박한 식량사정에 처해 있는 이 때 국민의회에서는 시에서 정맥 20呎를 배급받았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니 부시장을 비롯하여 각 과장을 출석시켜 알아보자 동의(재청가결)

◇ 鄭應杓의원 긴급동의

- 영해동 파출소 옆 잔교에 정박되어 있는 경비선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실천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폭풍우로 인하여 잔교가 파괴되어 선박업자들이 수리할 성의를 가지고 있으나 경비선을 옮기지 않으므로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다.

다시 시장에게 건의해서 제거토록 본 의회 결의로써 재요청하자 동의(재청가결)

◇ 李小圭 부의장

- 이 문제는 시청에 소속된 문제가 아니다.

전일 내가 서장에게 물어 보았는데 서장 말이 다른 곳으로 옮길 때가 없다고 하였다.

아무튼 시장님이 돌아오시면 서장과 협의해서 옮기도록 하자

◇ 金南鎭의원

- 금반 호별세 부과에 대하여 시민의 여론이 자자하는데 그 중 18억圓씩을 징수하고 있으며, 기타 같은 종목으로 해서 징수한 것이 1년간 수억에 달하고 있어 의무교육의 실천이란 말 뿐이니 이 자리에 교육감을 출석케 해서 진상을 들여보자 동의(가결)

◇ 李小圭 부의장

- 토론을 이만 마치고 결산서 승인은 기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니 전체 회의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통과시키기 바람

◇ 李福柱의원

- 결산서 승인은 중요한 문제이며, 통과시키려 하였으나, 며칠 전 신문지상에 목포시 회계에 흑막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어 이를 통과시키면 사범당국에서도 의아해 할 것이니 통과는 잠시 연장할 것을 동의

◇ 鄭應杓의원

- 李福柱의원의 동의안도 좋지만 일일이 장부를 갖다놓고 심사를 했으나 흑막이 발견되지 않았다.

내용에 흑막이 있다해서 아직 유죄무죄가 들어나기 전 서의 심사만 기다려서 승인한 것보다 의회에서 조사위원 3명을 선정해서 내용의 진상을 조사케 하자 동의에 첨가

◇ 李小圭 부의장

- 결산서 승인은 도에서 일괄해 중앙에 제출케 되었는데 목포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도에서 상당히 책임추궁하는 공문까지 왔고 또는 분과 위원회에서 신중 심의 했으니 결산서는 오늘 통과시키고 앞으로 조사위원 3명을 선정해서 귀추 여하를 알아봄이 좋겠다.

◇ 金采庸의원

- 단기4284(1951)년도 결산서 승인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니 통과 시키자는 논법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의회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해야 할 것이며, 단기4284(1951)년도 결산서 승인에 있어서는 자치의회에서 책임질 문제이니 신중 토의를 하고 검토해서 자신있는 승인을 해야 할 것이다.

◇ 李小圭 부의장

-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시킬 것은 행정당국에 지장을 준 것밖에 안되니 막연히 지연시키는 것보다 기한을 결정하여 승인하도록 하자 재개의

◇ 李福柱 의원

- 오는 28일 본 회의를 열자 동의

◇ 金三星 의원

- 28일까지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나왔는데 요사이 항간에 여론이 자자한 호별세 부과문제, 동회장 임명문제가 끝나고 또 결산서 승인 끝나도록 회의를 계속할 것을 동의에 첨가

◇ 陳福春의원

- 국민의 3대의무 중 하나인 세금에 누락자가 많이 있다.
조속히 누락자를 철저히 조사해서 과중 과세자의 원성이 없도록 하자 긴급 동의

◇ 李在洪의원

- 金永完의원으로부터 목포시 14개 동장 갱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러한 처사의 독재성과 편파성, 부당성을 아니 지적할 수 없다.
물론 시장에게 임명할 권리가 있다고 하나 관치행정시에도 동에 고문제를 두어 동장을 선정했는데 자치행정을 실시한 이 때 시의원에게 말 한마디 없이 타동에 거주자를 임명시키고, 또는 오늘 임명했다 내일 갱질하는 동장 인사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李福柱의원

-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부와 국회가 이탈되어 있는 것은 인사문제에 있는 것이다.
동장이라 하면 동 실정을 잘 알아야 동정이 잘 운영될 것이다.
특히 시정감사 결과가 아직 시에 보고되지 않고 시비곡절이 논의되기 전에 인사행정을 단행했다.

동장인사는 시장과 의장이 단행하였다는데 의장은 21의원의 대표이지 동장을 임명할 권리가 없으며, 더욱이 의장은 자기 인척관계자를 용당동장으로 임명시키고, 산정동 3구 동장에는 모의원 선거 사무장을 임명했으며, 또는 동장을 하려면 국민회에 찾아와야 된다는 등의 사실이 있으니 23개 동장을 전부 파면시키고 임명했다면 시장의 처사를 유린할 수 없으나 14개 동장만 파면하고 하나씩 하나씩 임명하는 부당성을 지적 않을 수 없다.

◇ 金京炫의원

- 지금까지 토론한 문제가 동장문제인데 우리가 민족성에 비추어 생각할 문제이다.

왜정 36년간 우리민족은 ‘아마대라스 오호미가미’(일본 제1대 천황의 아버지)를 얼마나 숭배했었는가?

소소한 동장 문제를 가지고 시비논쟁 할 것이 아니라 동장에 누가 임명되었든 간에 그 동장을 충실이 받들면 잘 운영 될 것이다.

특히 5천년의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로서 동장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내 마음이 대단히 괴롭다.

동장문제는 시장이 돌아오면 직접 물어보자.

◇ 陳福春의원

- 중요한 동장문제를 방관할 수 없다.

요사이 세금의 과중과세의 부당성은 오로지 동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 李在洪의원

- 金京炫의원의 발언은 눈감고 아옹하는 소리다.

◇ 李福柱의원

- 죽교동 3구동장도 총무과장 앞에서 모가지 떨어졌다.

시정계장이 요사이 몸도 편찮으니 좀 쉬기로 하고 나중에 총무과장이 말끔할것이니 지금 사표를 내십시오 해서 할 수 없이 콩도장을 찍어주고 부시장에게 가서 물어보니 자기는 전혀 모른다고 했으며, 그 후 며칠이 지나 그 동에 살지 않는 사람을 동장으로 임명시켜 동민들은 진정서를 받았는데 파출소에서는 진정자를 잡아다 정치적으로 국가를 망치는 자라고 해서 물어 보았으나 그 구 출신의원인李文吉의원이 만들라 해서 하였다는 사실이 있다.

◇ 鄭應杓의원

- 죽교동 3구 동장 임명에 있어서는 제가 잘 아는 사실이다.

물론 자기가 아는 자가 임명되었으면 이런 말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3구동장 박종함씨를 임명한데 대하여 시장은 아무런 근거없이 한 것이 아니고 그 동민의 진정서까지 와있는 것을 내 자신이 보았다.

또 파출소 사건에 있어서도 호법회비 및 국채소화 관계로 반장 회의를 소집했는데李文吉의원이 주동이 되어 몇 반장을 선동해서 출석치 못하게 하였기에 무슨 이유로 반장 회의에 지장을 준 것인가를 조사해 달라고 파출소

에 의뢰했다.

아무튼 민선으로 임명했으면 이러한 갑론을박이 없을 것이니 하루속히 동장 선거에 대한 도규칙을 제정토록 건의하자 동의(재청 가결)

◇ 金南鎭의원

- 동장 문제 때문에 시장을 불신임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단점을 지적해서 고치고 이러한 실정을 방청객과 언론인에게 알리자는 것이다.

◇ 金永完의원

- 소방대원을 동원해서 조사해 본즉 호별세 부과에 누락자가 많이 있다.

또한 남일운수회사 앞 판자집에 무려 198만圓의 호별세를 부과했는데 그 집에 대한 재력을 1주일 두고 고향에까지 가서 조사해 보았으나 그만한 대액 납세자가 못되며, 또한 똑같은 재력을 가진 상점에도 차이가 있는 부정당한 것이 있으니 재무과장으로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 李在洪의원

- 선창가에 똑같은 음식점에도 한집은 3백 몇십만圓이 부과되었고, 또한 집은 20만圓이 부과 되었다.

그리고 영해동내 모 유능한 집이 빠졌으며, 그이는 반장께서 말하기를 나는 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는 지명은 아니하나 시 모 계장은 세금브로커 노릇을 하고 있다.

◇ 鄭應杓의원

- 똑같은 술장수집에 장사라도 성하게 한 집은 2, 30만圓 나오고 소주 한되나 갖다놓고 파는데는 130만圓이 부과되었으며, 특히 鄭應杓 자신한테도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 부시장께 말씀드린 일도 있다.

◇ 재무과장 金宗云

- 호별세에 대한 조사 방식에서부터 부과까지 설명이 있었음(설명내용은 별지와 여함)

◇ 金南鎭 의원

- 동장 임명이 잘못되어서 호별세 부과가 불공평하다 하니 시에서 과세에 대하여 동장에게 일임했는가?

◇ 재무과장 金宗云

- 동사정을 잘하는 동민이라든가 동장으로 하여금 균형을 마치기 위해서 사전 협의도 했다.

특히 업체에 있어서 조사 당시의 직원이 변동한 관계로 철저히 파악치 못했다. 그러나 과세 표준에 대하여는 불평이 없으나 담세력이 부족하다.

◇ 李在洪 의원

- 업체파악을 철저히 못했다고 자인했으니 호별세 부과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시의회와 시, 동의 3자가 합작해서 구성하여 이의신청서 들어온 것에 한해서 조사케 하자 동의(재청가결)

◇ 金采庸 의원

- 조세행정은 어떤 행정보다도 더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세 부과문제는 목포시 유사 이래 처음 보는 불미스러운 일이다.

이는 마땅히 행정 책임자로서 시장이 책임질 문제이며,

첫째로, 행정에 경험이 없다는 것,

둘째로, 지방 실정에 능통치 못하다는 것,

셋째로, 민의를 존중치 않고 민정을 파악치 못하며, 부하 직원을 통솔치 못하면서 부정과세, 정실과세가 생기게 된 것이니 초대 민선 시장으로서 중대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호별세 문제에 있어서는 시의원이 총동원해서 완전무결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李在洪의원과 동의에 참가하며, 동장문제에 있어서는 직선제가 있을 때까지 종전의 예에 따라서 할 것이며, 아무런 행정상, 직무상 위반이 없는 동장은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한 민선 시장의 처사일 것이다.

특히 내가 살고 있는 동장은 과년 국채소화 및 세금징수에 등상(登賞)까지 한 전도적으로 우수한 동장이며, 사재까지 내어 동정에 성심 노력하는 동장인데 갱질되었다.

◇ 李小圭 부의장

- 세금조정위원회의 구성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기 바란다.

◇ 李在洪의원

- 선거구 별로 선출된 의원과 시직원, 동직원으로 구성할 것

◇ 金永完의원

- 시의 경비지출에 있어서는 선후를 구분해서 지출할 것을 총무과장에게 부탁한다.

전반 폭풍우시에 소방대원, 민방공대원 및 해군을 총 동원하여 구조작업에 분망중인데 부시장과 각 과장은 스리코타를 타고 순시하고, 시 모직원은 하이야를 타고 돌아 다니며 작업하고 있는 대원들을 감독, 순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고 나는 현장에서 '자동차나 몰고 꺼꾸러졌으면 좋겠다'고까지 생각했다.

더욱이 5, 6, 7월분 직원 월급도 지불되지 않고 시내의 곳곳에는 쓰레기가 산적되어 있는데 하이야 보다 우선 트럭을 구입해서 할 일이다.

앞으로 지출에 있어서는 선후책을 강구해서 시행하기 바란다.

◇ 陳福春의원

- 자동차 구입에 있어서는 내가 먼저 발언하였는데 처음에는 시내 쓰레기도 제거하고, 배급소 양곡도 운반하기 위해서 트럭을 사고 그 다음에 하이야를 사기로 했는데 하이야를 먼저 구입했다.

◇ 李小圭 부의장

- 몇 개월 전 시장 선거의 감정을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며, 아무런 진전이 없으므로 산회하겠음.

◇ 李小圭 부의장

- 회의록 서명에 金京炫, 金永完의원을 지명

◇ 李小圭 부의장

- 산회선언(오후 2시 10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 날인함

단기 4285(1952)년 8월 25일

副議長: 李 小 圭

議員: 金 京 炫

": 金 永 完

作成者 書記: 千 世 鳳

호별세 부과에 대한 답변서

목포시 재무사무를 담당한 불초로서 각 업체 실태를 파악치 못하고 있음은 저의 잘못으로 알고 각 납세자 및 시의원 여러분에게 고애를 주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 시 부임 당초부터 호별세 부과 간접자료를 수집키 위하여 납기 개시전에 조정을 완료코자 부과계 직원으로 하여금 각 동을 담당시켜 정실에 끌리지 말고 공정한 영업조정에 착수중 중앙청으로부터 각 동 지방주무자 및 각 시 재무과장 회의가 있으니 상부하라는 통지에 의하여 출석하였던 바 국회와 정부간에 마찰이 있어 지방세법 개정이 지연될 듯 하니 현행법에 의거하여 과세하되 예산에 지시한 액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지시를 받고 7월 5일 귀청하여 기왕 조사타가 미필한 영업조사를 계속하고, 그 후 현주 조사한 바 세대주에 다수세대가 부족기로 재조사 시켰으며, 그 후 각 업체별로 균형조사를 감행하여 소득액 산출등급 결정 후 각 동장에게 안내하여 시에서 등급이 결정되었으니 1차 자기 동에 대한 균형 관계를 1차 보아 달라고 요청하여 일부 수정을 가하여 집계한 결과 6백만개 이상이 부족기로 각 동별로 40등 이상 다액 등급을 선발하여 업체에 대하여 과세하였습니다.

고지서 발부는 8월 16일 동장회의 석상에서 전달되었는데 금일에 이르기까지 680건 이의신입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과세표준에는 별 이의가 없으나 담세력이 없으니 감액하여 달라는 건수가 대부분이며, 소득액에 대하여 신입한 건에 대하여는 재조정을 단행하여 그릇된 점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시정할 계획입니다.

제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록

1. 일 시: 단기 4285(1952)년 8월 26일 오전 11시

2. 장 소: 의회 의사당

3. 개의성립:

1) 참석의원: 18명

劉正斗, 李小圭, 李福柱, 明南喆, 金三星, 金南鎭, 李在洪, 陳福春,
林一男, 金京炫, 金八用, 鄭應杓, 金慶禧, 朴贊圭, 金采庸, 金子洪,
金永完, 吳世一

2) 불참의원: 3명

文宅鎬, 李文吉, 金吉煥

3) 참석한 자치단체의 직원

朴連太 총무과장, 金滢善 산업과장, 姜聲哲 회계계, 曹喜大 교육청

4. 보고사항:

1) 전차 회의록 통과: 朴燦大 간사 낭독

2) 죽교동 3구 동장 갱질에 대한 진정서 및 감사장 낭독

3) 청과물 도매시장 장소변경에 대한 진정서 낭독

◇ 劉正斗 의장

- 개회선언

(오전 11시)

◇ 劉正斗 의장

- 진정서는 1차 각 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케 함이 좋겠다.(가결)

◇ 陳福春의원

- 어제 본 회의에서 李在洪의원이 시장의 사생활 문제에 흑막이 있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사실 아닌 누명을 쓴 것인가?

발언 의원으로부터 진상을 들어보자 동의(가결)

◇ 劉正斗 의장

- 시장이 있지 않아 규명할 수 없으니 돌아오면 출석케 해서 규명함이 좋겠다.

◇ 金采庸의원

- 시장에 대한 비난이 자자하나 시장 부재로 답변할 자도 없는데 육한 것은 신사도에 어긋난 일이다.

내일 모레 온다 하니 이 문제는 시장이 오면 즉시 속개하기로 하고 시급히 해결 지어야 될 호별세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오후에라도 착수할 것이며, 위원회구성에 있어서는 의원과 시 직원으로 하되 동에 있어서는 현 동장 가운데 모 의원의 인척 관계에 있는 자라든가 동의 실정을 알지 못한 동장도 있고 하니 전 동장으로 할 것이며, 또는 호별세 부과액의 약 7할을 점하고 있는 교육세가 포함되고 있는데 시의회에서는 통과된 일도 없어 거액에 달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도탄에 허덕이는 사회상에 불합리적이니 이런 법적 근거와 조치에 대하여 교육감과 재무과장을 출석시켜 들어보기로 하자 동의(재청 가결)

◇ 金三星의원

- 조정위원회는 신구동장이 같이 참석하자는 金采庸의원의 동의에 첨가

◇ 金南鎭의원

- 시정 감사 당시부터 말썽거리가 되어있는 군경원호회 운영에 있어서는 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로 지출한 것이 3천 8백만圓이고, 본 사업에 지출한 것이 6백만圓에 불과하며, 금년도 예산 편성을 보더라도 2할 1부가 본 사업에 해당되고 그 나머지는 요령 부득한 운영비에 충당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모순점이 있어도 상부의 명에 의해서 할 수 없다 하니 근본적으로 법을 시정하도록 국회에 진정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해서 지방실정에 알맞는 원호사업을 실시할 것을 긴급동의함과 동시에 분회 참사를 출석케하여 설명을 들어보자(부결)

◇ 金南鎭의원

- 이 안건을 보류시킨 한 사람으로서 그 내용의 흑막에 있어서는 시장이 관련된 문제이니 결산서 승인에는 시장님이 돌아올 때까지 보류할 것을 재개의(재청 가결)

◇ 군경원호회 참사

- 군경원호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설명 요지는 별지 첨부)

※ 의원과 참사간에 군경원호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계속 약 30분간 계속(생략)

◇ 金慶禧의원

- 군경원호사업에 대하여 건의하자는 金南鎭의원의 동의안은 중앙에서 실시한 군경원호사업에 대한 강습회가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보류할 것을 동의(재청 가결)

◇ 교육청 서무과 조희태

- 단기4285(1952)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설명요지 별첨)

◇ 金采庸의원

- 시교육위원회 세입세출예산 승인에 있어서는 오후 속개시에 관계직원을 출석케 해서 토의할 것을 동의(재청 가결)

◇ 총무과장 朴連太

- 작년도 결산서 부의의 건 및 동장 임명의 건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음.(설명 생략)

◇ 李在洪의원

- 시장이 오면 토의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를 휴회할 것을 긴급동의(재청 가결)

◇ 劉正斗 의장

- 휴회선언

(오후 2시 5분)

◇ 劉正斗 의장

- 속개선언

(오후 4시)

※ 단기 4285(1952)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예산 보고의 건

◇ 교육감 申炫仲

- 사친회비 문제와 예산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음(설명요지 별첨)

※ 의원측과 교육감간에 질의응답 약 20분간 계속 생략

◇ 金采庸의원

- 목포시 실정에 맞지 않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 시급히 교육위원회에 환부, 재검토해 예산을 경정토록 할 것을 동의(재청 가결)

◇ 陳福春의원

- 시내 오물의 제거 및 배급소 양곡을 운반키 위하여 시장 승용차인 하이야를 팔고 트럭을 살 것을 동의

◇ 李在洪의원

- 오늘 회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명일 작년도 결산서를 통과시키고 세금 조정위원회 구성에 들어갈 것을 긴급동의(재청 가결)

◇ 劉正斗 의장

- 회의록 서명에 李在洪, 金慶禧의원을 지명

◇ 劉正斗 의장

- 산회선언

(오후 6시)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 날인함

단기 4285(1952)년 8월 26일

副議長: 李 小 圭

議員: 金 慶 禧

”: 李 在 洪

作成者 書記: 千 世 鳳

劉 市議會議長 貴下

근계 조국통일과 직무를 위하여 주야 분투하심에 충심으로 감패불기 이옵나이다.

정부통령 취임도 끝났고 금 20일부터 국회도 개회되나 앞으로는 총리인준을 둘러싸고 우여곡절이 재기될 듯!

연이나 국민의 대다수는 국무원개편과 정책쇄신을 갈망하고 있음도 취임불망인듯한 감이 유하옵니다.

극생은 목포가 객년에 수산조합을 그리고 거반에 세관(감지)를 여수에 약탈당하고 7월 1일부터 외자도입조차 타항에 뺏기고 목포항은 누락되었다는 중앙 소식을 듣고 객월 27일 급히 도착하여 각 요인들에 절충하여 보았으나 목포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행정장관인 시장과 민의를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 상공회두, 지방요인들이 국회의원을 동반 매일 같이 각개 요인을 역방하여 별별수단 방법으로 지방발전과 번창을 위하여 적극 활동함으로서 기관을 신설 또는 복구 확장함에 급한데 목포에서는 정당 암투에 여념없이 개개인의 영달 출세에만 급급하여 시민을 괴롭히고 피차의 모략증상으로 발전을 저해할 뿐 목포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는 너무나 소극적인 점에 유능한 인사들은 다같이 통탄치 않을 수 없습시다.

여수를 위시하여 군산, 마산, 포항, 목호 등지에서는 행정시장, 시의회의장, 상공회두, 지방요인들이 국회의원을 동반 매일 같이 각개 요인을 역방하여 별별수단 방법으로 지방발전과 번창을 위하여 적극 활동함으로서 기관을 신설 또는 복구 확장함에 급한데 목포에서는 정당 암투에 여념없이 개개인의 영달 출세에만 급급하여 시민을 괴롭히고 피차의 모략증상으로 발전을 저해할 뿐 목포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는 너무나 소극적인 점에 유능한 인사들은 다같이 통탄치 않을 수 없습시다.

진정으로 목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고 민생고를 해결하려면 어촌화 되어가는 목포를 외자도입항으로써 경제부흥을 촉할 것이요, 맹동하는 노동자들에게 일터를 주어 활로를 개시케 할 것이며, 6.25시 파괴됨을 복구 건설하여야 노동자의 권위와 신망을 확보할 것입니다.

미구에 한국에 수입되는 양곡 4백50만석이 목포에 다량 도입되도록 시급히 적극 활동하여 주심을 재갈망하옵나이다.

차건 추진에는 안길수씨의 고견을 존중시함이 지당하겠습시다.

극생은 금 20일 국회 개회로 귀부한 각 국회의원과 같이 C.A.C 본부, 부흥단 대표, 농림장관, 외자청장을 역방역설하여 차건을 기필성사에 노력하여

보겠습니다.

언론기관을 통하여 여론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조속상부성사를 양측하나이다.

여불비 상서 8월 20일 龍相捧拜

제 6회 목포시의회 제 3차 회의록

1. 일 시: 단기4285(1952)년 8월 27일

2. 장 소: 의회 의사당

3. 회의성립:

1) 참석의원: 16명

劉正斗, 李福柱, 明南喆, 金三星, 李在洪, 陳福春, 林一男, 鄭應杓,
金京炫, 金慶禧, 李文吉, 金采庸, 金子洪, 吳世一, 金永完, 金南鎮

2) 불참의원: 5명

李小圭, 文宅鎬, 朴贊圭, 金吉煥, 金八用

3) 참석한 자치단체의 직원

朴連太 총무과장, 姜聲哲 회계계

4. 개회선언

劉正斗 의장

(오전 10시 30분)

5. 보고사항:

1) 전차 회의록 통과

◇ 李福柱의원

- 요사이 의원간에 있어 무질서한 일이 빈번하다.

민주정치는 도의정치요, 어디까지나 책임정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자요, 6천의 소리를 들어 언론을 통하여 의회에 올려놓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불참하여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데 대하여는 규탄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재작일 회의에 있어서는 시급을 요하는 호별세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유도 없이 산회선언을 했고 이러한 독재성을 지적한 의원에게 불순한 발언을 하여 시민의 웃음꺼리가 되었다고

하니 이러한 李小圭의원의 경거망동을 규탄 아니할 수 없으니 이 문제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과 즉시 비밀회의를 열어 징계사범 심의에 들어갈 것을 동의(재청 가결)

◇ 金京炫의원

- 의사일정을 보면 李小圭의원 문제가 아니고 보다 더 시급한 세금문제 때문에 동장도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 징계사범 심의는 다음으로 하고 지방세 조정위원회를 먼저 구성할 것을 개의(가 2로 부결)

◇ 劉正斗 의장

- 지금부터 비밀회의로 들어가겠음(오전 11시 20분)

※ 비밀회의 약 20분간 계속

◇ 劉正斗 의장

- 비밀회의 결과에 있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본 회의에 상정키로 가결되었음

◇ 陳福春의원

- 지난 25일 본 회의에서 돌연 산회선언을 해서 李在洪의원이 흥분을 폭발하였는가는 모르나 시장 사생활에 대한 흑막을 발언하였는데 그 사실여부에 대한 진상을 李在洪의원으로부터 들어보자(긴급동의)

◇ 劉正斗 의장

-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자도 없으니 시장이 오면 출석시켜 규명함이 타당한 일이다.

◇ 李在洪의원

- 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배를 갈라 공심판을 받겠다.

5월 7일 시장 당선되자 8일에 광주에 출장 갔다 9일날 와서 당시 회계계장 양갑승에게 생활비로서 한달에 백미 3㏓, 부식대 신탄대를 요구했으며, 돈으로 환산하면 월 3백만圓 정도이고 연액 3천6백만圓 4년간이라면 무려 1억 4천 몇백만圓에 달할 것이다.

시직원들은 3, 4개월전부터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봉착하고 시민들은 민생고로 말미암아 도탄에 허덕이는 차에 취임한지 2, 3일 밖에 안되는데 쌀 세가마니를 주라, 부식대를 주라 하니 이돈이 3백만圓이 될지 6백만圓이 될지 누가 알 것인가?

그후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양승갑은 건설과로 내려보내고 그 후임으로는 재무과에서 왔는데, 신임계장에 대한 청내의 여론이 계장운동을 할려면 '자기한테 오라던가, 호별세를 감액할려면 부탁하라'는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고 있다.

◇ 金永完의원

- 전반 사무 감사시 양곡관계를 담당했는데 당시 백미 3가마니 백모씨 명의로 끊였었고 대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어 있어서 회계계장에게 물어본 즉 시장의 생활비 요구 문제가 나왔었다.

그리고 당시 죽교동에서는 아사자가 발생했는데 시장은 아사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누차 목포일보에 기사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어디까지나 민선 시장으로서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등등의 사실을 보아 李在洪의원 말의 옳은 것이다.

※ 이어 金永完의원으로부터 시장 불신임에 대한 탄원서 낭독(별지 첨부)

◇ 金南鎭의원

- 시발전을 위하여 시장 문제 때문에 연 3일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흑백을 확실히 가리기 위해서는 시장이 오면 이 자리에 출석시켜 규명하는 것이 타당한 일일 것이다.

만일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한다면 나는 퇴장하겠다.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는 냉정히 비판하여 사실을 규명해서 옳지 못한 점은 어디까지나 지적해서 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것이다.

※ 鄭應杓, 金南鎭, 金京炫, 의원 퇴장(오전 12시 20분)

◇ 李福柱의원

- 민주정치는 민의에 의한 정치이다.

민선 시장으로서 목포시를 발전시키고 구출하려면 민정을 잘 파악하고 민의를 존중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독재적이었으며, 가지가지의 비행의 말을 듣고 정의감에 불탄 자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것이다.

시를 위한 시장이 아니라 매일 같이 고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호화스런 시장이니 이런 시장은 한시라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탐관오리를 숙청하고 명랑한 목포시 건설에 매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李在洪의원

- 10분간 휴회할 것을 동의(재청 가결)

◇ 劉正斗 의장

- 선언

(오전 12시 30분)

◇ 劉正斗 의장

- 속회선언

(오전 12시 45분)

◇ 劉正斗 의장

- 전체 시선이 시장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내가 결코 시장을 옹호하고 구곡하고 아부하지는 않는다.

만일 시장의 비행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13만 시민이 이를 용서한다 할지라도 처벌은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전원은 시민보다도 앞서 규명할 것이요, 사실 여하에 있어서는 불신임까지 해서 시장을 몰아내는 것이 지당한 일이다.

그러나 재판에 있어서도 피고측과 상대측의 충분한 의사를 들어 시비 판정한 연후에 결정을 하듯이 상대방의 답변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최후수단을 취한다면 시의회 경거망동밖에 안될 것이다.

연립내각제인 불란서를 보더라도 빈번한 조각으로 인한 영향은 다만 시민에게 불안을 주었고 그 사회는 몰락되어 가고 있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시장의 비행이 사실이라면 어느 때라도 쫓아 낼 수도 있고 불신임할 수 있는 문제이니 시장이 돌아오면 즉시 회의를 열어 사실을 규명함이 타당하며,

합리적인 일이라 하겠다.

◇ 陳福春의원

- 인생에서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을 것이다.

李在洪의원 자신이 배를 갈라 공심판을 받겠다고까지 한 시장의 비행은 사실일 것이다.

◇ 林一男의원

- 시장 비행에 있어서는 쌍수를 들어 추궁하고 싶다.

나는 결코 시장을 옹호하지 않는다.

우리는 거반 시정 사무 감사시에 전혀 그러한 사실을 발견 못했으며, 그 당시 金永完의원도 그런 말이 전혀 없었다.

시장의 비행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불신임할 수 있는 문제이니 시장이 오도록까지 이 문제를 보류할 것을 동의

◇ 金采庸의원

- 시장 문제에 있어서는 자중론과 단행론이 있다.

시장 부재중 본인으로부터 답변과 변명도 듣기 전에 단행한다는 것은 불합리적이며, 최고 범죄자라도 최후 진술할 기회를 준 것인데 시장도 오기 전에 불신임한다는 것은 불합리적이며, 모략적 언사를 가지게 할 기회를 줄 것이라는 것도 지당한 일이다.

그러나 시장 비행에 대하여는 시민이 잘 아는 사실임으로 오늘 단행해도 시장에게 해산권이 있으니 단행해도 지당한 것이다,

더욱이 관치행정에서 민치행정으로 옮겨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내 공기가 대단히 음산한데, 이 공기를 하루 속히 제거해야 할 것이다.

이는 대체적으로 보아 인사문제, 세금 문제 또는 민의를 받아들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역행하고 있으며, 동장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종전에 따르라고 자치법에도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독단이다.

세금도 인사행정과 같이 민의를 듣지 않고 처리한 것은 어디까지나 관료적이며, 독단적이다.

서장에서 시장이 된 것도 일대 영광일진데 자기 양복이라도 팔아서 자축의 축하연을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3, 4개월분의 직원 봉급도 지불 못하는 빈약한 시재정에서 2백만圓이나 지출했으며, 취임 며칠 안되어 사생활 문제

를 요구하는 가지가지의 비행 등으로 보아 본인이 없어도 조금도 부족이 없을 것이니 단행론에 가담할 것을 陳福春의원의 동의에 찬성

◇ 劉正斗 의장

- 우리는 공통된 이해관계와 시의원이다.

엄정하게 말씀드리자면 金采庸의원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사형수에도 최후의 진술할 기회를 주고 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양식인으로서 신중을 기하고 사실을 규명해서 결과적으로도 악영향이 없도록 본인이 올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양식인이 취할 태도일 것이다.

더욱이 시장 비행이란 李在洪의원의 발언은 간접에서 얻은 말이고, 또는 전에는 기밀비가 계상되어 있으나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 이런 전도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 林一男의원

- 동장문제 등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불평을 가진 사람중의 한사람이다. 사실을 규명치도 않고 단행한다는 것은 의회의 경거망동이라 하겠고 이 문제는 하루빨리 단행할 것이로되 본인이 오도록까지 보류하지 않고 논쟁만 한다면 나는 퇴장하겠다.

시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을 기하자는 것이다.

◇ 金采庸의원

- 평소에 마음에 없는 것을 공개석상에서 한 것은 본의가 아니지만은 올바른 시정을 하기 위하여 발언했다.

민선 시장으로서 전에 없던 기대를 가졌었는데 시직원들은 3, 4개월분의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고 산적되어 있는 오물문제, 배급소 양곡운반 문제 등이 있어도 트럭 한 대도 못사는 빈약한 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3천만圓의 거액을 던져서 하이야를 산 것이 실책이다.

또한 고급요정을 폐지해야 할 차제 2건이나 신규허가를 내준 것도 실책의 하나이며, 광주 출장비만 하더라도 종전에는 20만圓 이상을 넘지 않았는데 60만圓의 출장비를 요구했고, 이번 부산 출장여비만 하더라도 물자를 구입한다 했지만 수백만圓을 가지고 갔다.

물론 시장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이 오기까지 추후 기회를 주는 것도 좋으나 시민들은 비등되고 있으니 이 자리에서 단행하는 鄭應杓, 林一男의원께서도 동일 보조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 鄭應杓의원

- 죽일 죄인도 최후 진술을 할 기회를 준다고 했다.

본인은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과오가 있다해서 본인이 부재중에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본인이 와서 사실을 규명하고 비행이 있다면 21명의 의원과 똑같은 생각에서 불신임을 단행할 것임으로 오늘 단행하는 데는 참가치 못하겠다.

◇ 林一男의원

- 나는 사실면에서 있어서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어촌화 되어가는 목포시를 볼 때 시장에 대한 기대가 어그러졌다.

그러나 내 자신 그러한 비행을 발견치 못하였으니 내 자신이 발견해서 할 것이며, 남의 말에 합류해서 할 수 없다.

※ 鄭應杓, 林一男의원 퇴장을 가부 성원 미달

◇ 金采庸의원

- 시장 신임문제에 있어서는 시장이 오고 안오고 간에 내월요일로 속개하기를 동의

◇ 李福柱의원

- 내토요일 속개할 것을 개의(재청 가결)

◇ 李福柱의원

- 단기4284(1951)년도 목포시 세입세출 결산서 및 학교비를 제외한 단기 4284(1951)년도 시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는 12차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했으니 오늘 승인할 것을 동의(재청 가결)

◇ 劉正斗의장

- 회의록 서명에 金采庸, 吳世一의원을 지명

◇ 劉正斗의장

- 산회선언

(오후 2시 50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 날인함

단기 4285(1952)년 8월 27일

議長: 劉 正 斗

議員: 金 采 庸

”: 吳 世 一

作成者 書記: 千 世 鳳

제 6회 목포시의회 제 4차 회의록

1. 일 시: 단기 4285(1952)년 8월 30일

2. 장 소: 의회 의사당

3. 회의성립:

1) 참석의원: 13명

劉正斗, 李福柱, 明南喆, 金三星, 李在洪, 陳福春, 鄭應杓, 林一男,
金慶禧, 金子洪, 金采庸, 吳世一, 金永完

2) 불참의원: 8명

李小圭, 金南鎭, 文宅鎬, 李文吉, 金吉煥, 朴贊圭, 金京炫, 金八用

3) 참석한 자치단체의 직원

朴連太 총무과장, 金滢善 산업과장

4. 보고사항:

1) 전차 회의록 통과: 千世鳳 서기 낭독

5. 부의 안건:

1) 시장 불신임에 관한 건

◇ 劉正斗 의장

- 개회선언

(오전 11시)

6. 토의사항:

◇ 鄭應杓의원

- 연 3일간 시장 비행에 대하여 논의되어 왔고 또한 비합법적인 시정에 대하여 저희들 21명 의원이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면 시민으로부터 커다란 심판을 받을 것이며, 어디까지나 21명 의원 똑같은 생각아래 단행해야 할 것이

다.

그런데 요사이 항간에 의회는 정의와 신진으로 구분되어 파쟁 싸움에 갈등을 겪고 있다는 여론이 자자하다.

그전에도 이런 불미한 여론이 있을 때 사실무근한 오해를 받기 싫어서 우리는 당리당쟁을 일삼는 시의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시민에 예속된 시의원이라는 명백한 성명서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간접에서 얻은 말이나 의원간의 파쟁 싸움에 시민들만 죽는다는 소리를 들을 때 대단히 가슴 아픔을 금치 못하겠다.

내가 시장의 비행이 있음에 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규명해서 21명의 의원이 동일한 보조를 취할 것이며, 시장 불신임도 재적의원 3분의 2인 14명이상이 출석해야 될 것인데 오늘은 성원미달이고 또 시장께서 월요일쯤 틀림없이 온다는 말도 있으니 도의적 입장에서 시장님이 오시면 하도록 내 8월 3일 속개할 것을 동의(가결)

◇ 李在洪의원

- 9월 3일도 좋으나 시장과 동행하였던 劉의장 말도 금요일날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는 것을 보니 월요일에 올지 1년 뒤에 올지 누가 알 것인가?
월요일 온다는 확실한 것을 규명함이 좋겠다.

◇ 李在洪의원

- 劉의장과 같이 와서 시장은 광주에 남아 있다는 말이 항간에 떠 돌고 있는데?

◇ 劉正斗 의장

- 시장은 토요일에 나는 일요일에 출발하여 여수로 해서 갔으며, 부산서 3일 저녁 자고 제주를 경유해서 온 관계로 시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알 수도 없는 사실이다.

◇ 金永完의원

- 부산 출장 목적은 무엇인가? 말해주기 바람

◇ 劉正斗 의장

- 청과물 도매시장 허가문제, 항만시설 문제를 비롯 시장 취임 인사차 갔다.

◇ 金永完의원

- 민주정치는 여론정치이어야 한다. 여론의 성공은 신문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 시의원들은 목포시 여론을 종합해서 볼 때 회계관계 직원이 장부를 가지고 행방불명 되었다하며, 청계면 공사만 하더라도 전반 중앙에서 조사위원들이 왔으나 시에서는 하등의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

어제 폭우로 인하여 시청 쌀 2백가마니가 썩어 가고 있는데 시직원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소방대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시직원의 무성의와 연다른 사고미에 대하여 시에서 얼마만한 대책이 서있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 劉正斗 의장

- 경찰서장으로부터 보내온(해운업자 동향에 관한 언동의 건) 서한문 낭독

◇ 鄭應杓의원

- 요사이 시내 선박업자는 몰락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다.

이의 해결은 오로지 항만시설의 확장을 도모하여 타항으로 화물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과 노임 지불에 신속을 기하여 업주와 종사자간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는 일대 사회문제이니 이 건은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중 검토해서 의회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일 같으면 협조케 해서라도 지방 발전에 기하자 동의(재청 가결)

◇ 金永完의원

- 이번 폭우로 인하여 시내 수개 동의 많은 가옥이 침수를 당하고 있는데 오늘 회의가 끝나는 즉시 의회에서 위로키로 하자 동의(재청 가결)]

◇ 鄭應杓의원

- 위로반을 4반으로 구분하고 반편성에는 당해구 출신 의원을 구성할 것을 동의(재청 가결)

※ 반편성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다.

班 別	地 域 別	議 員 名
第 1 班	連 洞	劉正斗, 金三星, 林一男
第 2 班	大 成 洞	李在洪, 金永完, 吳世一, 金采庸
第 3 班	竹 橋 洞	鄭應杓, 金子洪, 李福柱
第 4 班	溫 錦 洞	陳福春, 明南喆, 金慶禧

◇ 金永完의원

- 오늘 아침 보고에 의하면 침수로 인한 양곡 중 시청 관계미가 백미 18ㄷ, 보리 39ㄷ, 수수 22ㄷ, 밀 4ㄷ이고 정부 관계미가 백미 25ㄷ, 나락 300ㄷ, 현미 90ㄷ인데, 오늘 현장에 가서 침수당한 양곡을 조사해서 부패하기 전에 내일 각 동에 배급하도록 하자 동의(재청 가결)

◇ 산업과장 金滢善

- 금동 배급소에 보관중인 배급용 양곡 백미 18ㄷ, 정맥 39ㄷ, 소맥 4ㄷ, 고량 22ㄷ가 현재 침수되고 있다.
이 침수미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니 긴급조치로 침수미를 경쟁입찰 시키느냐 혹은 침수 당한 세공민에게 급속 배급을 실시함이 여하한가, 시의회 의견이 있으면 경청하겠다.

◇ 鄭應杓의원

- 과거에도 경쟁입찰제는 부당하니 이재민에게 배급함이 좋겠다.

◇ 산업과장 金滢善

- 의견과 같이 이재민에게 배급실시 하겠음

◇ 李在洪의원

- 만약 현재 침수미를 배급하면 그 대충책을 여하히 할 것인가?

◇ 산업과장 金滢善

- 그 문제는 시로서 만전을 기하여 후일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당장에는 지장이 없다고 본다.

◇ 鄭應杓의원

- 총무과장 오실 때까지 휴회할 것을 동의(재청 가결)

◇ 劉正斗 의장

- 휴회선언 (오후 12시 50분)

◇ 劉正斗 의장

- 속개선언 (오후 12시 55분)

◇ 劉正斗 의장

- 총무과장이 출석했으니 설명을 들어보자

◇ 총무과장 朴連太

- 어제 항공편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조회해 본즉 천기 관계로 오지 못했으며, 하루속히 오시기 위하여 선편으로나 혹은 기차편으로 오실 것 같다.

그러나 내일쯤은 틀림없이 올 것 같다.

시에서는 연락이 닿는 한 여러 각도로 힘써 알아 보았다.

◇ 李福柱의원

- 회계직원 정창근이가 장부를 가지고 기피했다는데?

◇ 총무과장 朴連太

- 현재 구속되어 있는 직원도 사전 연락이 없었으며 공무원 법에도 부하직원의 수사에 대하여는 상관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몰랐다.

◇ 劉正斗 의장

- 회의록 서명에 鄭應杓, 金三星의원을 지명

◇ 劉正斗 의장

- 산회선언 (오후 1시 50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85(1952)년 8월 30일

議長: 劉 正 斗

議員: 金 三 星

” : 鄭 應 杓

作成者 書記: 千 世 鳳

제 6회 목포시의회 제 5차 회의록

1. 일 시: 단기4285(1952)년 9월 3일 오전 11시

2. 장 소: 의회 의사당

3. 회의성립:

1) 참석의원: 15명

劉正斗, 李福柱, 鄭應杓, 林一男, 金南鎭, 金京炫, 金八用, 金吉煥,
金慶禧, 金采庸, 金子洪, 吳世一, 金永完, 朴贊圭, 李小圭

2) 불참의원: 6명

明南喆, 金三星, 文宅鎬, 李文吉, 李在洪, 陳福春

3) 참석한 자치단체의 직원

朴在祐 시장, 徐良鳳 부시장, 金滢善 산업과장, 金宗云 재무과장,
尹柱炫 사회과장, 吳在鵬 건설과장, 金容俊 호적병무과장, 각 계장 전원

4. 의사 일정표:

1) 보고사항

5. 부의사항:

1) 목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2) 목포시 동세조례

3) 목포시 오물문제

4) 목포시장 불신임의 건

6. 개회선언

劉正斗 의장

(오전 11시)

◇ 鄭應杓의원

- 朴在祐 시장의 개인문제가 아니라 목포시 전체에 걸친 문제이니 계장급 이

상의 간부는 전부 출석시킬 것을 동의(재청 가결)

7. 보고사항:

- 1) 전차 회의록 통과
- 2) 제 1회 징계자격위원회 회의록 낭독
- 3) 시의회 간사, 서기 임명의 건
- 4) 제 1회 시정감사 처리 전달보고

◇ 李福柱의원

- 방금 보고한 시정감사 처리 전달에 있어서는 낭독만으로는 이해키 곤란하니 각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케 하자 동의(재청 가결)

◇ 劉正斗 의장

- 지금부터 시장의 답변을 들어보자

◇ 李福柱의원

- 시민의 환심 가운데 전개된 오늘 회의에 시장 문제를 강경히 주장한 의원이 출석치 않고 있다.

오늘 아침 출석한 것을 목격했으며, 어제 밤에는 압력을 받았다는 말도 있으니 의장께서 알면 알려주기 바라며 회의만은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자신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 劉正斗 의장

- 나는 전혀 모른 일이다.

금후에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그 진상을 책임지고 알아보겠다.

◇ 朴在祐 시장

- 금반 민선 시장으로 취임한지 3개월 반이 됐다.

부산출장으로 본인의 부재중 거반 개최된 의회에서 나에 대한 공격, 각 신문에 보도된 것, 시장 부정사실이라 해서 내무부장관 및 경찰국장에까지 보낸 불신임에 대한 탄원서 등을 종합해서 말씀 드릴 것인데 내게 관련된 것은 내가 답변할 것이다. 나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직접 관련된 각계 주무자

가 답변할 것이다.

첫째로, 호별세 부정과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결정되지 않아 시에서는 상당히 당황했으며, 상부의 지시가 없어서 목포시는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러나 재무과장은 재무사무에 능숙한 분이어서 전적 신뢰했고 나로서도 상당히 혼시도 했다.

부하직원의 부정을 말씀했는데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재무 사무에 대하여는 주무과장이 답변하겠다.

◇ 金采庸의원

- 과장의 설명은 전반에 들었으니 중복할 설명은 들을 필요가 없다.

◇ 朴在祐 시장 설명 계속

- 책임 소재의 한계에 있어서는 총체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거니와 사무적 감독은 보조기관인 부시장 및 각 과장에게 있다.

특히 민선시장의 역할에 있어 반은 사무적이고 반은 정치적이어서 총책임은 시장에게 있을 것이로되 사무적 책임은 직원에게 있는 것이다.

금반 호별세에 대한 이의신입이 9백건이 접수되었다 하나 다른 시군에 없는 부정행위는 전혀 없었고, 부과개수를 더 첨가해서 한 일도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시군에 비하여 모순된 부과행정은 하지 않았다.

더욱 이 문제에 있어서는 호별세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 있다하니 부적당한 점은 하루속히 시정해서 올바른 민주행정을 하겠다.

◇ 李福柱의원

- 교육위원회 편성에 있어서는 내용에 미비한 점이 많아 재교정하여 의회에 제출하라 했는데 아무런 시의회의 통과도 없이 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나변에 있는가?

◇ 朴在祐 시장

- 예산 편성은 이미 시장 취임 전이고 또 승인까지 받은 것이어서 다만 보고에 불과하다.

중앙국민학교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과도 상의했으나 듣지 않았고 예산 범

위내에서 8교실로 축소한 것에 불과했지 전체액의 삭감은 못했다.

◇ 金采庸의원

- 민선시장이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8억圓의 거액에 달하는 교육비는 현하 시민의 생활고에 비추어 방대한 예산인 만큼 전체면을 재 고려해서 민 부담을 적게 해야할 것이다.

더욱이 의회를 거친 일도 없이 다액의 세금을 부과한데 대하여 전 시민의 여론이 비등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같이 금년도 호별세가 호의적으로 완납될 줄 아는가?

◇ 朴在祐 시장

- 교육비 예산은 나로서 삭감할 수 없고, 사실 권한 밖의 일이라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교사, 관사문제는 수 년 전부터 계획한 일이었다. 다만 어느 것을 삭감하느냐가 어려운 일이었는데, 금년에는 착공을 아니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의원 제공께서는 차점을 특히 참작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금년도 호별세가 완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는 사무당국이 최선을 다하여 완납을 기 하겠다. 의원 제공께서도 적극 협조 해주기 바란다.

이 세금문제는 비단 목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며, 이는 전시하 우리 앞에 어떠한 곤란이 있더라도 극복하며 납세이행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일제시대에 있어서도 복종했거니와 우리들이 우리의 행정을 실현해가는 단계에 처한 오늘날 민국의 장래와 전승을 위하여 납세에 총괄기해야 할 것이다.

◇ 金采庸의원

- 18억圓의 교육비 예산도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받아 내는데 아무런 검토도 없이 하였고, 중앙국민학교도 물론 조급한 일인데 연차 계획으로서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뿐만 아니라 일계원이 편성한 예산을 금과옥조같이 여긴다는 것은 유감이다.

◇ 金永完의원

- 출석치 않은 李在洪의원 등이 사찰계에 있다고 전하는데 사실이면 곧 출석

토록 수배하기 바란다.

◇ 金永完의원

- 18억圓의 거액에 달하는 교육비예산을 보고 정도로 하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 하겠고, 1억圓 이상이나 되는 교장사택비는 없어도 좋을 것이며, 현 정세 하에 꼭 납부해야 될 호별세가 금일에 이르기까지 납부하지 않는 실정을 볼 때 인적구성의 모순성과 직원 중 부정 공무원이 쌀과 돈을 받고 하는 과세의 불공정에서 생긴 것이며, 영해동만 하더라도 120건이나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다고 한다.

◇ 金南鎭의원

- 시장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 뿐 모든 사무에 있어서는 책임소재가 명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빵 하나 얻어먹은 것도 시장이 책임지라, 급사 가물을 얻지른 것도 시장이 책임지라 하는 것은 공격발언 밖에 안되니 사실을 규명해서 올바른 말을 바란다.

◇ 金采庸의원

- 시장간에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보조기관도 아닌 시의원으로서 답변 아닌 답변하는 것은 유감이다.

◇ 朴在祐 시장

- 직원의 사생활문제까지 따라 다니면서 알 수는 없다. 직원의 부정사실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신상필별주의로 나가겠다. 그리고 내가 부정에 관련되어 있다면 전책임을 지겠으나 직원과 관련된 문제는 책임질 수 없다.

그리고 직원 이용을 잘못하였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시장 불신임 안전 중 인사문제가 하나인 것도 안다. 관치로부터 민치행정으로 옮김에 있어 경질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광주시만 하더라도 직원이 70명, 각 동장까지의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으나 아무말이 없었다.

시내 14개 동장경질에 대한 이유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으니 비밀회의를 열어 주었으면 좋겠다.

동장 인사 관계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재성이 있다함을 인증하는 바이나 절대 정실관계의 요소가 없는 나로서 정

실인사는 하지 않았다. 동장인사에 있어서는 자문으로 의장, 부의장, 부시장과 협의했으며, 사람이 좋고 추천자가 좋아 시정을 잘 하기 위한 것이니 일단 시장에게 맡기고 잘못된 것 같으면 솔직히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협의해 주기 바란다.

◇ 林一男의원

- 호별세 문제에 있어 부정한 직원은 신상필벌주의로 나가겠다 했는데 왜정시 보면 세금부과시에는 세무종사 직원은 이동을 하지 않았는데 부과직원을 이동시킨 것은 나변에 있는가?

◇ 朴在祐 시장

- 계장급에 있는 사람은 전형시험을 치렀는데 부과계장이 낙제되어 부과사무에 익숙한 상공계장인 김용기씨를 임명했고, 징수직원 몇 명 신규 채용한 것 밖에 없다.

◇ 李福柱의원

- 시민의 생활정도와 담세력을 파악한 사람만이 정당한 부과사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재무과 직원 중 기본조사를 할만한 직원이 불과 5, 6명밖에 안되며, 우둔하고 말썽이 많은 이필재를 회계계장으로 앉힌 것은 무엇 때문이며, 기타 직원을 아무런 과오 없이 파면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 朴在祐 시장

- 엄청난 이동은 없다.

무단 파면했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 바라며, 이필재를 회계계장으로 한 것은 품행을 몰랐기 때문이며, 사고를 내기 위하여 고의로 임명했다는 발언은 반성하기 바란다.

◇ 金永完의원

- 호별세 문제 때문에 시민들은 죽네 사네하고 떠들고 있는데 시장 자신이 반성해야 될 것인데 시의원에게 반성하라는 것은 모순된 말이니 취소하기 바란다.

◇ 朴在祐 시장

- 의원 자격으로서 반성이란 말은 취소하겠다.

◇ 李福柱의원

- 동장 경질에 있어서는 의장, 부의장, 부시장이 개입했다는데 할말이 없거나
와 당시 시정감사의 내용의 시비곡절을 겪지 않고 단행했으며, 부시장은 일
체 인사문제에 개입치 않았다고 했으며, 정실인사는 아니었다 하나 시장 자
신이 내 사람이니까 꼭 써야 되겠다고 언명하지 않았는가?

추상적인 답변보다 사실적인 답변을 바란다.

◇ 金永完의원

- 죽교동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반장 회의를 개최하여 동장 선출하기에 논의
도 있었는데 난데없이 그 동에 살지도 않는 이길양이란 사람을 임명한 것은
몇 반장한테 물어 보니 이길양이란 사람을 전혀 모르며, 서기한테 물어본즉
7반에서일시 살았다 하나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영해동 동장에도 조석변동의 인사 조치가 있었다.

◇ 金采庸의원

- 파면시킨 14개 동장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있다하나 시정감사 보고가 시에
보고되기 전에 동장 임명이 단행되었다.

더욱이 일선행정예 배치된 동장 임명은 민의를 존중해서 해야 할 것이며,
일제시대에도 초력연맹의 추천을 받았고 해방 후에도 고문과 유지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한 실정인데 대부분이 과오로 경질하였다는 것은 자치법에 어그
러진 일이다.

이러한 처사에 시민은 비등되고 있는데 호별세가 납기일까지에 완납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

◇ 鄭應杓의원

-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방금 동장 추천에 고문, 반장, 유지 말이
있었는데 유지의 한계가 어려운 일이며, 그들의 추천이 절대 공평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죽교동 3구 동만 하더라도 지방의원 선거가 끝나자 자치법에 동장 직선조
문이 있기 때문에 곧 시행될 줄 알고 동민 가운데는 동장 운동하느라고 내

부적 암투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전 동장인 장중현씨도 자기에게 호감을 보이지 않는 반장을 없애기 위하여 60개 반장을 40개 반장으로 축소하였고, 제 37반장 정우도는 생활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세공민 배급을 6명이나 주었고, 36반 윤고재는 피난민도 아니면서 피난민 배급을 주고, 36반장 정부인에게 구호미 한말을 배급 주고 또 이유평 반장에게는 유명인구까지 넣어 수배케 하는 등 자기심복인 반장에게는 이와 같은 부정배급을 하여 포섭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불의에 포섭한 반장으로서 선거하면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이니 부정당선이라 하겠고 또한 유지의 한계도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잡부금 취급에 대한 시장 훈령 제 1호가 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교동 3구 동장은 반장을 불러 매호당 잡부금 1천圓씩을 징수하라 했다.

◇ 朴在祐 시장

- 동장 경질에 대하여는 그의 기밀이 누설되어 상당한 파동이 있었고 동 서기까지 쑥덕거리게 되어 제반 동사무가 진공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급작이 인사이동을 단행했으나 오직 민선시장으로서 새로운 기분과 새로운 정신으로 시정을 해보겠다는 의욕에서 한 것이니 의원 제공의 양찰을 바란다. 그리고 잡부금에 있어서는 징용 및 징병의 불가피한 사정에서 각출한 것이다.

◇ 金永完의원

- 金三星, 明南喆, 李在洪, 陳福春의원이 사찰계에 있다는데 간사를 출석케 하자.

◇ 劉正斗 의장

- 사찰계장 말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

◇ 李小圭의원

- 동장 문제에 말썽이 많은 동은 죽교동 3구동, 북교동, 죽동인데 북교동장 경질에 있어서는 전 동장이 세공민 배급을 5세대분 수배하고 있으며, 조절미만 하더라도 6가마나 착복했으며, 또한 술집마다 외상값으로 말이 자자하다 하는 말이 동회 서기 입에서 나왔다.

이것으로 보아 대부분 각 동에 있어서 유사한 것이 동장 문제이니 그만두고 시장 불신임에 대한 열거된 10개 조항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자

◇ 朴在祐 시장

- 영해동장은 吳世一의원의 공석에 대한 결원을 보충한 것이고 강학명씨는 자진 사퇴했기 때문에 추동장에 대한 유임 진정서까지 들어왔기에 추성균씨에게 발령했다.

◇ 劉正斗 의장

- 산정동 1, 2구 동장에 있어서도 전 동장의 일신상의 인격과 신망에는 저촉되지 않았다. 본인의 출신구 산정동 2구동장에 대하여는 동민 투표를 해보면 알 것이다.

그리고 산정동 1구동장은 劉正斗의 처남이나 정실 인사라 했는데 도대체 정실인사는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가 모르겠다. 정실인사라는 것은 동장의 자격도 없고 임무를 감당치 못한 자라든가 이 같은 일가친척이나 금품을 받고 하는 것이 정실인사라 하겠다. 이런 한계를 모르고 무조건 정실인사라 함은 바보천치 같은 말이다.

그리고 대구에 송청까지 당한 자라고 말이 있는데 동장은 그런 일이 전혀 없고 친척이 광목사건에 붙들린 것은 있으나 동장하고는 하등 관련이 없는 것이다.

타동에 거주한 사람이다 일제 때부터 약 20여년 간 그 동에서 거주하는 중 8년 동안 구장직을 하다가 중동 시장 서기를 지냈다.

그 후 전기회사에 취직되자 고막원 출장소장으로 있다가 다시 목포로 전임해 일시 용당동에 우거한 사실이 있으며 동민의 요청도 있고 해서 임명했던 것이니 공격하기 위한 공격, 비난하기 위한 비난을 함으로써 만일 시정에 침체를 초래하게 된다면 결국 시정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이유없는 지연은 반정부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으로 피차가 근신하여야 될 것이다.

◇ 金采庸의원

- 노발한 어조로 답변하는 의도는 이해키 곤란하다. 그는 맹목적으로 하라는 강요인지 훈시인지 대리답변인지 모르겠으며, 반정부 운운하였는데 어디에

그런 것이 있는지 똑똑히 답변하기 바란다.

◇ 李福柱의원

- 의장이 천치바보라고 하였으니 달게 받겠다. 그러나 의장이 반정부 운운함은 언어도단이다. 반정부적인 언동이라 함은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파괴시키고 또는 살인, 방화를 일삼는 공산당들을 보고하는 말이라고. 오로지 대한민국을 육성하고 대 목포시를 건설하자는 의도에서 시정하자고 외치는 소리가 왜 반정부주의란 말이나

◇ 劉正斗 의장

- 흥분한 것은 진행시키기 위한 욕망에서 한 것이다. 반정부라 하였음은 공격 아닌 공격, 비난 아닌 비난으로서 회의를 지연시키며, 시정에 지장이 되지 않느냐는 의미이니 오해 없기 바란다.

◇ 鄭應杓의원

- 시의원이 행동하는 데는 신분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억압해서는 안된다. 4의원이 사찰계에 있다고 金永完의원께서 말이 있었는데 사찰계장은 없다 하였다.

그러나 시장문제를 가지고 논의되는 중대한 이 자리에 참석치 않는 것은 무슨 곡절이 있는 것 같다. 흔히 상대방 당의 세력이 약해지면 그 당을 가르켜 민국당이니 또는 공산당으로 지적하는 사례가 있다. 오직 경찰국가는 경찰로서 망하고 군국주의국가는 군국주의로 망하는 것이다.

중요한 이 문제를 공표 정당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네 의원을 출석케 하자.

◇ 劉正斗 의장

- 중대한 범죄 사실이 없다면 교섭의원 1명을 보내자.

◇ 鄭應杓의원

- 사무 당국에서 다녀올 것을 동의(재청 가결)

◇ 劉正斗 의장

- 5분간 휴회선언 휴회

(오후 2시 30분)

◇ 劉正斗 의장

- 속개선언

(오후 2시 50분)

◇ 朴連太 간사

- 경찰서 사찰계에 다녀왔으나 사찰계에는 없었고 李在洪의원을 만났는데 곧 출석한다는 말이 있었다.

◇ 林一男의원

- 시민들은 아사선상에서 해매고 있고 시 재정도 빈약할 것인데 시장은 이 점을 착안하고 했는지 모르나 시장 재임시 사용한 1, 2, 3연회비 및 시장 당선 축하 연회비까지 시금고에서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 朴在祐 시장

- 예산에는 접대비 항목이 있는 것이다. 목포시 앞날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의 각 기관의 융화친목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 자격으로서 접대했던 것이다.

◇ 金永完의원

- 시장 당신의 자축연회비를 시금고에서 지출한 것은 부당한 일이다.

그렇다고 볼 때 시의원 역시 시행정을 위해서 참회했으니 의원들의 당선 자축연회비도 시에서 지불할 수 있는가?

◇ 李福柱의원

- 접대비 항목이 있다해서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을 지출한 것은 부당한 일이다.

시장 당선 3일 후 취임했는데 취임 전에 연회를 한 것은 어디까지나 자축이라 할 수 있는데 도의상으로 보아서 자기의 양복이라도 팔아서 지불하는 것이 당연지사일 것이다.

시 예산을 통과한 것은 시의원들이 통과를 시켰으나 의회에서 인증하지 않을 때엔 어떻게 할 것인가?

◇ 朴在祐 시장

- 인증을 하지 않는다면 반성하겠다.

◇ 金南鎭 의원

- 불신임에 대한 탄원서 내용 중 가장 악질적인 것으로 시장 선거 해준다고 부시장 서양봉으로부터 염전 절반을 착복했고, 나주군수 김영춘으로부터 4백만圓을 요구했다는데?

◇ 朴在祐 시장

- 부시장 서양봉으로부터 염전을 받은 일이 없으며, 그것은 당사자로부터 물어보면 알 것이고, 나주군수 김영춘한테는 4백만圓 받은 것은 사실이다. 시장 재임시 내 개인적으로도 부시장을 지지했었고 도지사나 사령관, 국장까지 김영춘씨를 지지했었다. 내가 도지사를 만났을 때 도지사께서 하는 말이 '서양봉보다 김영춘이가 더 나올 것이니 김영춘이를 밀어달라'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목포에 오는 도중 김군수를 만나서 당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니 김군수께서 5백만圓을 주테니 적극 노력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경찰복을 입은 나로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다.

며칠 후 김영춘씨가 내려와서 4백만圓을 주었다.

의원 중에는 나보고 시장으로 나오라는 말까지 있었으나 나는 그를 일축하고 끝까지 김영춘씨를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나의 시장당선은 상상이외였던 것이다.

시장 선거일에 참석한 도지사께서도 경찰가운데서 당선되었다는 것은 경찰 국가의 오해를 일소할 뿐만 아니라 경찰관도 행정관이 될 수 있다는 경찰관 동지들에 대한 일대 경종이라고 찬양했으며, 그 후 김군수를 만났더니 평소의 친구로 가져 달라며 반가이 했었다. 그리고 돈은 다시 반환했었다.

◇ 金采庸의원

- 김영춘씨를 4백만圓을 반제 하였다는 것은 개인간의 부채 상쇄이다.

여하튼 출발시초가 불순하였고 시장 취임전의 연회비를 취임 후에 시에서 지출하였다는 공사혼동, 생활비 문제 등 이것만으로도 시민의 선망을 잃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시장 생활비 문제

◇ 金南鎭의원

- 4년간 시장을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데 보조기관도 아닌 시의원으로써 답변하는 것은 유감이다.

◇ 金采庸의원

- 시장간에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데 보조기관도 아닌 시의원으로써 답변하는 것은 유감이다.

◇ 朴在祐 시장

- 쌀 60㏩ 소비했으나 절대 요구한 일이 없으며, 내가 음주가도 아니고 가족도 3인밖에 안되므로 한 달에 3백만圓이 필요가 없는 것이며, 쌀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나로서는 자세히 알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면 알 것이다.

◇ 李福柱의원

- 중대 발언한 李在洪의원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요구조건에 대해서 재강조하는 바이다.

시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데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판단할 때 그런 일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문제의 본인인 양갑순이가 회계계장에서 관리계장으로 이동한 후 이 사실을 탐지하고 물어 보았더니 생활비로서 1개월에 백미 3㏩와 화목 1차 및 부식대까지 총당해 달라는 요구를 듣고 3일 동안이나 고민한 후 총무과장에게 문의하였던 결과 행정조치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일소에 붙였다.

부시장 역시 일소에 붙이니 마지못해 자기 혼자 양정계에 교섭하여 2차에 걸쳐 백미 2㏩씩을 배급하였고 화목 1본과 약간의 부식대를 총당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발언하였다.

다시 책임감을 느껴 경찰에 구속중인 양갑순 증인을 현재 형무소에 있어 이를 면회하여 재확인하였으니 다음 회의에 출두시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

◇ 양정계 백천수

- 시장으로부터 직접 요구받은 일이 없고 산업과장께서 서에서는 백미 3㏩씩

대주었다는데 시장이 식량에 대단히 곤란한 모양이란 말을 들었고 그 후 양갑순이가 찾아와서 서에서는 백미 3마석을 해주었다 하니 시에서도 배급을 해주자고 권하므로 내가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다 갖다 먹으라고 한 일까지 있었다.

그후 또다시 결재를 받아 왔기에 5월 13일 3마석을 배급해 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회계계장 양의 명의로 돌려보냈다.

영수증에는 백천수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결코 시장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다.

◇ 金永完의원

- 그 대금이 시재정에서 지출되었는데 지출결의서에 결재는 어째서 하였는가?

◇ 朴在祐 시장

- 시정에 분주하여 대내 서류결재는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李福柱의원

- 그러한 맹목적인 시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지방자치장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답변이다.

◇ 徐良鳳 부시장

- 압해면에 40을 비율로 한 염전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 6은 최씨가 갖고 14는 전 면장 정해진씨의 소유인데 지서주임한테 팔았던 것을 시장에 넘긴 것이지 내가 소유한 20은 양보한 일이 전혀 없다.

◇ 朴在祐 시장

- 압해지서 주임으로부터 좋은 염전이 있단 말을 듣고 장인께서 산 것이다.

◇ 金南鎭 의원

- 의원을 불법감금까지 하여 선거운동을 했다는데?

◇ 朴在祐 시장

- 민선 시장은 생각지도 않았으며, 권총을 차고 의원들을 불법감금한 일도 없을 것이니 조사해 보면 알 것이다.

◇ 金南鎮 의원

- 소위 혁신파라는 李小圭, 林一男, 鄭應杓, 金南鎮 4인은 어떤 사람을 시장으로 내느냐에 한 두 번 고민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朴서장은 1, 2, 3차까지 우리들을 초대하여 나주군수 김영춘씨를 소개했으며, 우리도 김영춘씨를 밀기로 완전히 합의했었다.

그 후 한일식당에서 모 순경이 일금 백만圓의 수표를 나에게 주었다. 나는 그 수표를 받고 그 날 저녁 내내 고민한 끝에 다시 대성동 최씨를 통하여 그 순경에게 돌려보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4년간 목포시 살림살이를 맡아볼 시장을 선출하는데 금품에 매수 당할 수 있느냐는 결의하에 시장선거 전일 낮에 재판소 앞 중국 요리 집에서 우리 6명의 의원은 朴在祐 서장의 인격을 토의한 끝에 朴서장을 밀기로 타합이 되어 서장실에 가서 朴在祐씨를 만나 朴서장님 옷 좀 “벗어볼라우”했으나 그 말의 뜻을 모르고 그때까지도 김영춘씨를 밀어달라고 했었다. 우리는 朴서장을 밀겠다고 했으나 서장은 쾌히 승낙하지는 않았다.

그 후 劉의장 댁에 가서 우리는 사심 없는 시장을 내자는데 합의를 보았고 강선명씨 댁에 가서도 굳은 약속을 하였다.

그 당시 李福柱의원도 동감이라 해 놓고 총검을 내밀고 불법감금 당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허위적 말을 할 수 있을까!

◇ 李福柱의원

- 劉의장 집에 모여서 강선명집으로 갈 때에 나와 金子洪, 金京炫 3인은 탈주하다시피 해서 중국요리집 김영춘씨를 만나서 내일 투표할 때에 1차, 2차는 다른 사람을 하나 3차에는 당신을 할테니 염려말라고까지 하고 강선명집으로 돌아 왔었다. 그날 저녁 강선명 집에는 朴서장도 와 있었으며, 4년간의 계획도 말하였다.

나는 김영춘과는 끊지 못할 관계이었으나 민국당으로 물기 때문에 솔직히 말을 못했으며, 나는 맹목적으로 따르겠다고 했더니 강선명씨가 맹목적이 무엇인가 하며 억압까지 당했다.

◇ 金京炫 의원

- 나는 절대 감금을 당한 일이 없으며, 최후까지 자유로 했다.

나는 교육자로서 교육행정의 시비로 인하여 그릇된 교육행정을 한탄한 나머지 공업학교에서 쫓겨나 상업학교에 가서 교장한테 뺨까지 맞은 자이며, 일본에서 철도까지 파괴한 내가 황금매수 당한다던가 자유를 구속당하면서 까지 맹종하는 金京炫이가 아니다.

◇ 朴贊圭 의원

- 불법감금당한 사람이라 하는데 그것은 언어도단이며, 절대로 감금당한 일이 없다.

※ 金慶禧의원 퇴장

(오후 4시 30분)

◇ 金采庸의원

- 시재정이 극도로 꺾박되어 3, 4개월분의 직원 봉급도 주지 못하고 또한 시내에 오물이 많이 있어서도 운반용 화물 자동차 한 대를 구입못하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내에는 들어있다 하나 모든 일은 선후책을 강구해서 긴급한 것부터 하는 것이 민선시장으로서 옳은 일인데 하이야를 산 것에 있는가?

◇ 朴在祐 시장

- 이 점에 대하여는 시민에게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목포시의 체면도 생각했고 그 동안 외국 손님이라던가 상부의 손님들이 올 때에 매우 곤란을 느껴서 예산내에 있고 해서 괜찮을 것 같아 산 것이다.

먹어 없어질 술 한 잔보다도 이것으로 인하여 시 발전에 이익이 온다면 좋을 듯 해서 산 것이니 의원 제공의 양찰을 바라며 앞으로 경매해 팔겠다.

◇ 金南鎭의원

- 시장은 한청과 결탁하여 하수도 준설공사를 5천만圓이나 부당 지출까지 해서 한청에 낙찰케 했다는데?

◇ 朴在祐 시장

- 하수도 준설공사는 1억 3천만圓에 낙찰케 했는데 본인은 한청과 결탁한 일도 없으며, 기술적으로 따져보면 그만한 것이 든다고 했다. 기술자로부터 설계관계와 입찰관계를 들어보면 알 것이다.

◇ 金采庸의원

- 시장 문제에 대하여 발언한 의원이 참석치 않았고 도의회에서도 시정감사차 내려왔고 시장 문제는 9월 10일 재개의기로 동의

※ 金永完, 吳世一, 金子洪의원 퇴장

(오후 5시)

◇ 李小圭의원

- 이런 일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던 것이 오늘 비로소 폭발한 것이며, 이것이 폭발되지 않고서야 4년간 도저히 시 행정은 할 수 없을 것이니 불미스러운 일이겠으나 한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1대 10으로 당선된 시장선거 결과에 대한 감정의 연장이라 하겠다. 천명 이상의 표수로 당선된 우리 시의원이 강선명씨가 강요한다 해서 추종한다는 것은 절대 없을 것이다. 나도 김영춘과는 전에 시총무과장 때부터 잘 알고 임기봉 의원께서도 김영춘씨를 밀어 달라고 심심부탁하기에 김영춘을 밀기로 했다. 그러나 한편 병사구사령관, 경찰국장까지 선거에 간섭하는 데는 불쾌했다.

어느날 통행금지 시간 중에 김영춘이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시장을 욕심낸 것이 아니라 차기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나온다는 말이였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권력 기관에서 간섭하는 것이 불쾌한데 시장으로 나온 것은 시민의 복리를 위한 것보다도 차기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하여 나온다는 데는 도저히 응할 수 없으므로 나는 거시서 결정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분을 시장으로 내세우느냐를 상당히 고민하다가 역대 경찰서장 중 민주경찰 구현에 가장 호평이 있었던 朴在祐 서장을 두고 생각할 때 학식도 풍부하고 외국어에 능통하여 외교적으로 적당하며, 또 한편 대한민국은 경찰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기에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까 金南鎭의원이 말씀하다시피 경찰서장을 만나서 권한 것이지 절대 감금당한 일이 없으며, 또는 정치적으로 민국당이냐 자유당이냐 해서 구분한 것이 아니라 의장선거, 시장선거의 감정 때문에 시 발전을 위한 가장 애국적인

말인 같은데 어디까지나 그는 朴在祐 시장을 꺼꾸러뜨리기 위한 것이며, 이는 11대 10의 시장선거, 의장선거로 인한 감정의 연장전에 불과한 것이니 현명한 시민의 냉정한 비판이 있기를 바란다.

◇ 鄭應杓의원

- 오늘 회의는 휴회할 것을 동의

◇ 劉正斗 의장

- 오늘 회의는 성원미달로 인하여 휴회하고 추후 일자를 정하여 속회하겠음

◇ 劉正斗 의장

- 회의록 서명에 金八用, 朴贊圭의원을 지명

◇ 劉正斗 의장

- 산회선언

(오후 5시 35분)

◇ 폐 회 식: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 날인함

단기 4285(1952)년 8월 30일

議長: 劉 正 斗

議員: 金 八 用

”: 朴 贊 圭

作成者 書記: 千 世 鳳